

#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3월 07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2년 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2년 3월 1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관람료 기준을 정함(안 제3조 및 별표)
- 관람료 감면에 대해 정함(안 제4조)
- 관람 등의 제한에 대해 정함(안 제5조)
- 환급 등의 적용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공유재산법 등의 준용에 대해 정함(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섭)

#### ○ 본 조례안은

평창군 대화면 일원에 조성된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람료 징수, 관람 등의 제한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에서는 광천선굴에 관한 관람료의 기준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람료의 감면, 관람의 제한, 환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징수 및 관리위탁 등 「공유재산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등의 준용에 대하여 제정하였음.

#### ○ 검토결과,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 안 제4조제1항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삭제
- 안 제4조제2항제3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신설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의 관리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344, 1539-1, 산538번지 일원의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이하 “광천선굴테마파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람료)** 광천선굴테마파크의 동굴 관람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65세 이상의 노인
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2. 6세 미만의 영유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관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준용)** ① 광천선굴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관람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동굴 관람료(제3조, 제4조 및 제6조 관련)

### 1. 주굴에 대한 일반 관람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개인	5,000원	4,000원	3,000원
단체(10인 이상)	4,000원	3,000원	2,000원

### 2. 지굴에 대한 체험 관람

구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개인	10,000원	8,000원	6,000원
단체(10인 이상)	8,000원	6,000원	4,000원

### 비고

1. “성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은 13세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별표 II 중 제31호 여행업 중 국내여행의 기준을 적용한다.
5. 관람료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6.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